

##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### □ 요청대상

#### ■ 대상자
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#### ■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#### ■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### 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#### ■ 요청방법
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#### ■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\*
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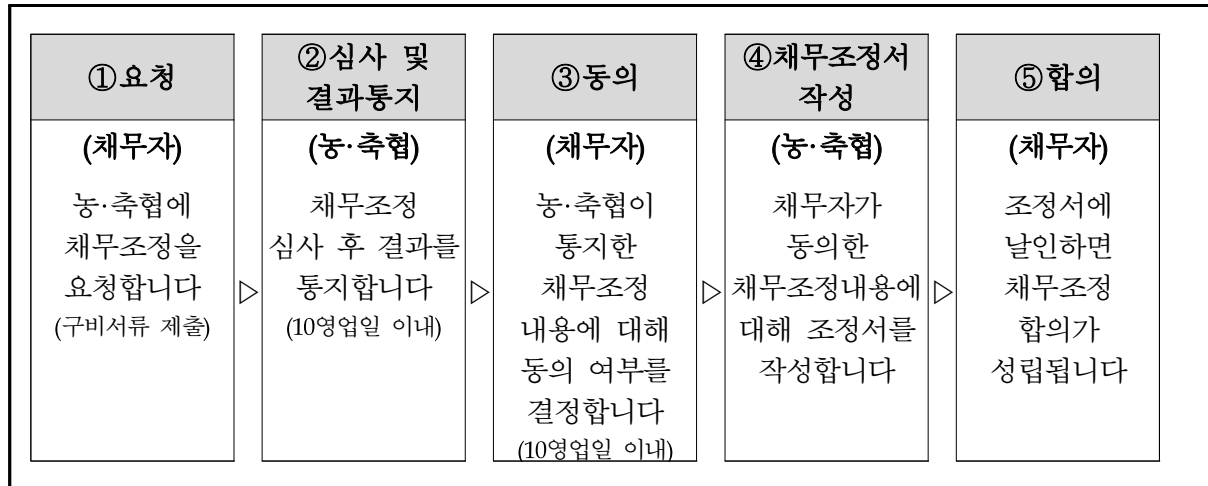
\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### □ 채무조정 내용

채무조정 내용(예시)

| 상환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환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자율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무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1년(6개월단위)</li> <li>▶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10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약정 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43%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체이자, 이자 감면</li> </ul> |

## □ 채무조정 절차



## 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 채무조정 요청서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| 성명 | 생년월일 | 연락처 | 주소 |
|----|------|-----|----|
|    |      |     |    |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| 본·지점 | 계좌번호 | 대출일자 | 잔액(원)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☐ 채무조정 요청사유

| 실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| 질병 및 사고                  | 소득 감소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☐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
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◇ 본 조합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장승포농협(☎055-687-3911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\_\_\_\_\_ (인)

## 채무조정안(채무자용)

## □ 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| 성명 | 생년월일         | 연락처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직업 | 월평균<br>소득(A) | 월평균 생계비(B) | 금융비용(C)<br>(타 대출 상환액) | 가용소득 (D)<br>(A-B-C) |
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  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□ 채무조정 요청대상

| 본·지점 | 계좌번호 | 대출일자 | 잔액(원)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☐ 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조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만기 연장                    | ( Y / N ) | 희망 유예기간(최대1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환 유예                    | ( Y / N ) | 희망 변제기간(최대1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율 인하                   | ( Y / N ) | 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채무조정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무조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 일부 유예<br>* 취약차주지원만 해당 | ( Y / N ) | 유예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예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 감면<br>* 취약차주지원 선택 불가  | ( Y / N 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 감면<br>(워크아웃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체이자 감면<br>(프리워크아웃) |
| 원금 감면<br>* 워크아웃만 해당      | ( Y / N ) | 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채무조정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무조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| ( Y / N ) | - (상환방법 변경) 만기일시상환방식→원리금균등상환방식<br>- (변제금충당순서 변경) 비용 이자 원금 순서 →비용 원금 이자 순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

